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1995. 1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

주요골자

- 기능 : 오인광고 내용의 심의(안 제3조)
 - 주민건강의식 오인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시정대상심의
 - 주민건강생활의 도민실천운동 추진
-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이내, 임기3년 (안 제2조)
 - 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 보사환경국장
 - 간사 → 보건과장
- 회의 :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의견청취 : 관계공무원. 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기관 단체의 자료 필요시 협조요청

근거법령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2. 기타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4조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 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 (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11조 (실비변상)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